

2026년 로레알 임직원 주식 소유제도
한국직원 설명자료

2026년 로레알 그룹 직원대상 주식청약제도에 따른 로레알 주식(“본건 주식”) 투자에 직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에 국가별 현지 청약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세무관련 정보를 개략적으로 요약하였습니다.

국가별 현지 청약에 관한 사항

청약기간

청약기간은 2026년 6월 10일 개시되어 2026년 6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직원은 청약기간 동안 <https://invest.loreal.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공됩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된 청약신청서로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신청서는 인사부서에 연락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청약하지 않는 직원은 적절하게 작성한 청약신청서를 필요서류와 함께 2026년 6월 24일까지 담당 인사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엘오케이 유한회사 - 이메일 주소: KRInvest@loreal.com, 우편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1층 로레알코리아 인사부서

청약가격

청약가격은 2026년 6월 5일에 본건 주식의 직전 20 거래일간의 평균 시초가에서 20% 할인한 가격으로 확정됩니다.

직원의 청약은 유로화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직원의 청약 목적 상, 고용주는 직원이 원화로 납입하는 대금을 2026년 6월 초경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유로화로 환산할 것이며, 직원은 해당 환율 정보를 요청에 따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보유기간 동안 본건

주식의 가치는 유로화와 원화 간 환율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원화 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높아질 경우 원화로 표시된 본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반면 원화 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원화로 표시된 본건 주식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지급방법 - 직원이 청약 시 이용할 수 있는 지급방법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3개월, 5개월 또는 10개월 할부급여공제(최대 10개월 할부 납입), 또는
- 2026년 7월 10일 ~ 7월 21일 내에 고용주 은행계좌로 계좌이체
 - 엘오케이 유한회사 - 은행: 한국씨티은행, 계좌번호: 0-001601-016, 예금주: 엘오케이(유)

직원의 주식 보관, 의결권, 배당금

직원의 주식은 금융기관인 Uptevia의 증권계좌에 직원의 명의로 보관됩니다. 직원의 주식 보관에 관한 정보는 청약기간 이후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직원은 보유하는 로레알 주식에 귀속되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로레알이 지급하는 배당금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직원은 직원의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유주식에 관한 연간 계정명세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외환규제

청약가격을 송금하기 전에, 국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거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간단한 행정 절차입니다. 송금할 자금 및 입증서류(예: 청약관련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청약가격 송금 절차를 위해 각 직원은 해당 업무를 고용주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 신고

해외 모회사가 직원 복지를 위하여 수립된 직원대상 주식청약제도에 따라 한국 과반지분소유 자회사의 한국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은 한국 증권법에 따른 공개의무가 면제되는 사모로 간주됩니다.

보유기간 및 조기 양도 사유 - 직원이 조기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2026년 로레알 임직원 주식 소유제도에 따라, 직원은 투자한 주식을 2031년 7월 30일까지(해당일을 포함함) 5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원은 다음과 같은 조기 양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종료 전에 조기 처분 및 양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결혼 또는 생활동반자 관계(civil union)
2. 셋째 자녀(또는 그 이상)의 출생 또는 입양
3. 이혼(최소 한 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보유하는 경우)
4. 직원의 배우자, 동반자, 생활동반자 혹은 전 배우자, 동반자, 생활동반자가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때
5. 직원, 배우자 혹은 자녀가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6. 직원 혹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7. 직원, 자녀 혹은 배우자가 특정 사업의 형성을 위하여 수익금을 사용할 때
8. 주 거주지의 취득 또는 확장을 위하여 수익금을 사용할 때
9. 과도한 부채
10. 고용 계약 종료
11. 주거주지의 에너지 효율 보수 작업을 위하여 수익금을 사용할 때
12. 전기 및/또는 수소 자동차의 구매를 위하여 수익금을 사용할 때

조기 양도 사유는 프랑스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에 상응하도록 해석 및 적용됩니다. 조기 양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사유에 관하여 고용주에게 설명한 후 고용주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상주식

직원이 투자하는 주식에는 무상으로 L'Oréal S.A. 추가 주식(“**무상주식**”)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매칭됩니다. 직원은 안내 소책자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청약주식에 비례한 무상주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상주식은 귀속기간이 종료되는 2031년 7월 무상주식제도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직원에게 교부됩니다.

아래에는 무상주식의 부여, 귀속 및 교부에 적용되는 특정 조건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invest.loreal.com> (프랑스어 및 영어)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무상주식제도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로레알 임직원 주식 소유제도에 청약하는 직원은 무상주식제도규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상주식 부여 조건: 2026년 로레알 임직원 주식 소유제도에 따른 무상주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원은 2026년 로레알 임직원 주식 소유제도에 따라 유효하게 청약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참여조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직원의 2026년 로레알 임직원 주식 소유제도에 대한 참여, 청약 또는 납입이 부여일(하기 정의됨) 이전에 거절되거나 취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 교부일(하기 정의됨)에 청약대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부여일: 2026년 로레알 임직원 주식 소유제도에 따라 청약된 주식이 발행되는 2026년 7월 30일 또는 그 직후가 부여일이 됩니다. 무상주식제도규정 조건(하기에 요약됨)에 따라, 각 수익자는 부여일로부터 수 주 내에 무상주식의 수익자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부여된 무상주식 수를 명시하는 전자 서신 또는 내역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교부일: 직원은 하기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31년 7월 31일경에 무상주식을 교부받게 됩니다.

보유기간 종료 시 무상주식 수령을 위한 조건(해당 조건에 대한 자세하고 완전한 설명은 무상주식제도규정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관련 조건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며 무상주식제도규정의 조항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무상주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2026년 로레알 임직원 주식 소유제도에 따른 청약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교부일 직전월의 20일까지 로레알 그룹의 직원 또는 임원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고용계속조건**”).

2026년 로레알 임직원 주식 소유제도에 따른 청약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교부일 직전월의 20일까지의 기간을 이하 “**인수기간**”이라고 합니다.

다만, 인수기간 중 언제라도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로레알 그룹의 직원 또는 임원직을 상실하는 직원은 상기의 고용계속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고용계속조건의 예외사유**”).

사망: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직원의 상속인(들)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상주식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여된 무상주식은 요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상속인에게 교부되며 인수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교부일에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인들에게 해당 무상주식이 교부됩니다.

장애: 인수기간 중 프랑스 상법 제L.225-197-1조에 따른 장애판정을 받는 경우, 부여된 무상주식은 관련 장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교부됩니다.

은퇴: 관련 국가의 법정 최소정년에 도달하거나 퇴직제도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무상주식은 교부일에 수익자에게 교부됩니다.

중대하거나 심각한 비위행위 이외의 사유로 인한 해고: 직원이 중대하거나 심각한 비위행위 이외의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부여된 무상주식은 교부일에 수익자에게 교부됩니다. 본 제도의 목적 상, 무상주식 수령권의 몰수를 수반하는 중대하거나 심각한 비위행위에 따른 해고 여부는 수익자의 해고에 적용되는 관련 국가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직원과 고용주 간 상호 합의에 따른 고용계약의 해지: 상호 합의에 따라 수익자의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무상주식은 교부일에 수익자에게 교부됩니다.

회사/고용주의 지배권 변동: 직원의 회사/고용주의 지배권이 변동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직원 또는 임원인 수익자는 교부일에 무상주식을 수령합니다.

무상주식의 소유권: 교부일에 교부되는 무상주식은 직원의 완전한 재산이 됩니다. 직원의 무상주식은 직원의 청약주식이 등록된 증권계좌를 통해 교부 및 보유됩니다. 로레알 계열회사가 무상주식의 부여 또는 교부로 인하여 무상주식의 수익자를 대신하여 세금, 사회보장보험료 또는 여타 정부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로레알은 무상주식제도규정 제10조에 따라 해당 수익자가 그러한 금원을 전액 지급하거나 로레알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지급을 약정할 때까지 무상주식의 이전을 지연하거나, 주식을 매각하여 관련 수익금에서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한국 거주 직원들을 위한 세무 관련 정보

본 요약본에서는 (i) 대한민국 세법 및 1979년 6월 19일 체결되어 1981년 2월 1일자로 발효되고 1991년 4월 9일자로 개정된 프랑스-대한민국간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조세조약”)의 적용 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며 자신의 투자분을 처분할 때까지 대한민국 거주자 상태를 유지하는 직원들 그리고 (ii)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프랑스에서 그 직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직원들(“참여직원”)에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나 모든 특정 사안에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는, 2026년 3월 당시 유효한 일반적인 원칙들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아래에 열거된 세무사항들은 2026년 3월 당시 적용되는 대한민국 세법 및 프랑스 조세법령 및 예규에 따라 기술된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및 법령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요약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므로, 완전하고 최종적인 내용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들 각자 별도로 세무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청약 시

I. 청약 시 관련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를 직원이 부담해야 하나?

I.1 청약 시 로레알 주식의 청약가격과 시가 간 차액에 대한 과세

네.

할인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입니다. 과세대상 할인액은 인수 시점의 주식시가에서 청약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목적 상, 인수 시점은 직원이 청약가격을 납입하는 때입니다. 최대 10개월까지 제공되는 급여공제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대여금의 상환에 해당하므로 청약가격은 일시금으로 납입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는 6.6~49.5%(주민세 포함) 범위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할인액은 직원의 현지 고용주에 대한 청구 없이 L'Oréal S.A.가 부담하므로 현지 고용주는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L'Oréal S.A.가 현지 고용주에 대한 청구 없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은 다음해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기초소득을 증가시키나, 현재로서는 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고용보험료 등 다른 사회보장보험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직원이 세무서에 을종소득에 대한 연간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는 을종소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직원의 소득이 연간 기준 하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신고액에 대한 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5년 11월부터 이러한 산정 내용을 직원들에게 통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2 무이자 선급금을 통한 지급금이 과세 대상입니까?

네.

급여공제를 통해 할부로 청약가격을 납입하는 직원은 해당 청약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용주로부터 무이자 대여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직원은 급여공제로 인화된 대여잔여금에 대하여 연 4.6%의 간주이율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소득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며, 6.6%~49.5%(주민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으로서 고용주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고용주는

직원의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수행할 때 실제로 직원의 과세대상 소득에 간주이익을 추가할 것입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사회보장보험료 역시 징수됩니다.

청약제도 기간 동안

II. 직원은 배당금에 대하여 세금 또는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까?

로레알이 분배하는 모든 배당금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i) 프랑스에서의 과세

프랑스 국내법에 따라, 프랑스 회사가 프랑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원천징수세 12.8% 공제 대상이며, 프랑스 세법 규정(French Tax Code) 238-0 A 1, 2 및 2 bis-1°에서 정의된 비협조국가 또는 지역(Non-Cooperative State or Territory, NCST)¹에 개설된 은행 계좌로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원천징수세 75% 공제 대상입니다.

(ii) 한국에서의 과세

네.

직원이 주식에 대하여 수령하는 배당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금액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전액이 됩니다. 주식 배당금으로 수령하는 소득은 15.4%~49.5%(주민세 포함)의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직원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신고 및 납세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배당소득은 지급연도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납부된 세금은 한국에서의 세금산정

¹ NCST 목록은 매년 변경됩니다. 현재 해당지역은 앵귤라, 안티가바부다,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바누아투입니다.

목적 상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직원은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프랑스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한국 소득세액에 총 과세소득 대비 국외원천소득비율을 곱한 금액을 최대 한도로 함)를 해당 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 월 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 세금은 10 년간 이월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을 합산한 연간 소득이 연간 일정 한도(연 2,000 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III. 직원이 소유주식에 대하여 부유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보유기간 종료/주식 매각 시

IV. 직원이 보유기간 종료(또는 인정된 조기 양도 사유)에 따라 보유주식의 매각을 요청할 때 세금 또는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까?

(i) 프랑스에서의 과세

직원이 주식 처분에 따라 실현된 이익은 프랑스 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ii) 한국에서의 과세

네.

직원의 주식 매각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직원은 관련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매각수익과 납입한 청약가격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개인의 주식매각에 대해서는 연간 2,500,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22%(주민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보유기간 종료 직후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금이나 사회보장보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상주식

V. 직원이 무상주식의 부여일에 세금 또는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VI. 직원이 무상주식의 교부일에 세금 또는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까?

네.

교부 시점의 무상주식 시가에 대하여 6.6%~49.5%(주민세 포함)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해당 혜택은 직원의 고용주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지 고용주는 무상주식의 시가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보장보험료와 관련하여, L'Oréal S.A.가 현지고용주에 대한 청구 없이 부담하는 해당 근로소득은 다음해 국민연금 부담금에 적용되는 기초소득을 증가시키나, 현재로서는 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고용보험료 등 다른 사회보장보험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VII. 직원이 무상주식의 매각일에 세금 또는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까?

네.

직원의 무상주식 매각이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직원은 관련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주식 교부일 당시의 시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개인의 주식매각에 대해서는 연간 2,500,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22%(주민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VIII. 직원의 로레알 주식 청약, 보유 및 매각 그리고 배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청약가격의 송금 시 외환관리 목적 상의 신고/확인절차 및 앞서 말씀드린 세무신고를 제외하면 다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외국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해외은행계좌, 증권계좌 등)의 월 잔고가 당해 연도의 각 월말에 5억원 또는 동액 상당의 외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 내에 해당 계좌를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최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고 요건에 따라, 현지 고용주는 주식기준보상이 개인소득세 목적상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연도(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RSU 귀속, 직원주식기준보상 매수/교부 등의 경우)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련 정보를 한국 과세당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 요건은 또한 2024년 이전에 부여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행사, 귀속 또는 매수/교부된 보상(예: 아직 교부되지 않은 이전의 로레알 주식제도의 매칭 주식)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